

[박학목]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40점으로 상향조정 해야만 하는 이유

내용 :

## 1. 법적 요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전문가 자격요건에 대하여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5조의2, 시행령 별표3, 별표 11, 별표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제90조 등 참조)

## 2. 산업안전지도사 제도 도입 취지 및 배경, 자격취득의 난이도

### 1) 도입 취지 및 배경

우리나라 산업분야의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범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산업안전지도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2021년 기준 50.4%)이며 그 주요 원인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 조직관리, 공정관리 등 기술외적인 문제에서도 다수 비롯되는 것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술 및 경영 전반까지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2) 자격 취득의 난이도

- ① 그리하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토목, 건축, 안전분야기술이론 전반에 걸친 기본소양과 거기에 더하여 기술사가 다루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인, 산업안전일반(일반시스템안전공학, 위험성평가 등),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등에 관한 전문지식까지 심도 있는 역량을 검증,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배출됩니다.
- ② 또한 기술사는 1년에 수차례 응시 기회가 있으나, 산업안전지도사는 연 1회 시험에다가 1, 2, 3차까지 3단계의 시험을 시행하여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 3. 국가전문자격 인정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술사보다 우위의 자격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령이 주로 산업기술 등 기술분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사 자격 부문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수용할 수 없다는 등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에 부당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2) 산업안전지도사는 그 자체가 국가기술자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협회 자격신고 시에는 국가기술자격증란에 등록할 수 없고 기타란에 표기하게 하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가 자행 중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관련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자격증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방증입니다.

3) 이에 산업안전지도사를 정당한 건설관련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제개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사를 건설관련 국가자격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사항을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이 아닌 산업안전기사와 동등으로 분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그 오류를 지적하여, 관련법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체계에 근거하여 기술사나 건축사

와 동급으로 인정하도록 재요청한 바, 22년 6월 10일 국토부에서는 지도사를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 이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국토부에 동일한 문 제점을 제기하여 같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2-1606호를 통하여, 6월 10일의 내용과는 동떨어지고 후퇴하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즉 산업안전지도사를 다시금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급이 아닌 기사 수준으로 분류하는 심각한 오류를 재차 범하고 있습니다.

#### 4. 결론 및 요청

1)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지도사는 법적으로 기술사 및 건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오락가락하는 행태는 심각한 행정낭비이며 모든 산업안전지도사들의 공분을 사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칫 국토교통부가 특정 이익단체에 휘둘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공공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더 나아가 안전사고에 대한 범국가적인 경각심이 고조되어 출발한 산업안전지도사 제도를 입안 시행하고 있는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라는 점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부당한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부처간 협조는커녕 자칫,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 원칙에 정면으로 대치될까 우려됩니다.

3)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게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정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